

2012. 4. 26. (목) 11:00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 목 차 】

1.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2.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 ----- 5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4.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5.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6.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16
7.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21
8.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5
9.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29
10.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33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04. 0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2. 04. 1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 4. 20
- 마. 의안번호: 제2012 - 14호

2. 개정이유

-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운영하고 있는 제안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제안제도의 목적 범위를 확대 규정함(안 제1조)
 -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제안의 목적 범위를 확대 규정함
- 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구체화함으로써 제안을 명확히 함.
(안 제3조)
 - '제안'과 일반 '의견 제출'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여 정의함

- 라. 제안의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안의 실현 가능성 여부와 창의성, 노력의 정도 등을 강조함(안 제5조)
- 마. 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우수제안의 결정, 채택제안의 등급 및 시상범위 등을 결정토록 함 (안 제6조)
- 바. 업무능력 및 실무경험이 많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토록 함.
(안 제7조)
- 사. 채택제안에 대한 포상 및 인사상 특전 부여(안 제8.9조)
 - 채택제안에 대해서 등급을 부여하며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하며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2011. 01. 05) 조례 제2006호로 제정하여 운영해오던 조례로서
- 제안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제안의 목적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고,
 - **안 제2조**에서는 ‘제안’과 일반 ‘의견 제출’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여 정의함
 - **안 제5조**에서는 제안의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안의

실현 가능성 여부와 창의성, 노력의 정도 등을 강조함.

- **안 제6조**에서는 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우수제안의 결정, 채택제안의 등급 및 시상범위 등을 결정토록 함.
- **안 제7조**에서는 업무능력 및 실무경험이 많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토록 함.
- **안 제8.9조**에서는 채택제안에 대한 포상 및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 개정 조례안은 제안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04. 0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2. 04. 1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 4. 20
- 마. 의안번호: 제2012 - 15호

2. 제안이유

- 거창군민의 날을 정하여 거창군민과 출향인들이 함께 경축하고 참여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애郷심을 높이고, 향토문화의 전승과 군민의 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나. 거창군민의 날을 정함 (안 제2조)
 - 매년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가능)
- 다. 군민의 날 행사시 통합 개최하는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문화·예술·체육·축제행사, 유공 군민에 대한 시상, 기념사업 등
- 라. 군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념행사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제정 조례안은 거창군민의 날을 정하여 거창군민과 출향인들이 함께 경축하고 참여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애郷심을 높이고, 향토문화의 전승과 군민의 화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조**에서는 군민의 날을 매년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적 행사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념행사 등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군민의 날 기념 통합행사 내용으로서 문화·예술·체육·축제행사와 유공 군민에 대한 시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 그 밖의 기념행사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는 기념행사추진위원회 구성내용으로서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행사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밖에**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운영토록 하고 있음.
- 이 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거창군민상조례(조례 제1928호) 제2조(시상시기 및 방법) 제1항 내용 중 "거창군민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군민의 날(매년 9월 25일)로 한다"에 근거하여 군민의 날을 매년 9월 25일에 시행해 오던 것을

- 별도의 거창군민의 날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그 동안 제각기 추진되어 오던 『군민의 날 기념식』 『군민체육대회』 『아름 예술제』 『녹색공간 농산물 대축제』 『평생학습 축제』 『거창 사과마라톤』 등을 통합 행사로 추진하여 각종 홍보물과 무대 등 각종 시설물을 통합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행사의 효율성 증대로 거창의 명실상부한 대표 축제로 자리 메김 하여 거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농산물의 홍보 및 판로를 개척하는 계기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04. 0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2. 04. 1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 4. 20
- 마. 의안번호: 제2012 - 16호

2.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군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각 조항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개정내용 등을 반영함(안 제5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의 개정내용 중 국외여행자의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 결제와 정산은 준용하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함
 - 『거창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나. 숙박비 지급 기준액 조정(안 별표)

- 제2호 숙박비 지급 기준액 30,000원을 40,000원으로 조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2012년 1월 6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숙박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여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5조**에서는 준용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각 조항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며 국외여행자의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 결제와 정산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
 - **안 [별표]**에서는 숙박비 지급기준액을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조정하였음.
 - 이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숙박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04. 0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2. 04. 1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 4. 20
- 마. 의안번호: 제2012 - 17호

2. 개정이유

- 현재 조성 중인 거창일반산업단지 구역이 2개의 법정리(남상면 월평리 일부와 대산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리로 편입·통합하여 향후 입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법정리 구역 일부를 조정함(안 별표 1)

- 남상면 월평리(15필지 217,733㎡) 일부를 남상면 대산리로 편입함
 - 월평리 214, 1328, 1373 - 2, 1348, 1372 -1, 1373 -1, 1594 -6, 1594 -7, 1598 -2, 1598 -4, 산6, 산45 -14, 산45 -15, 산45 -18, 산45 -19번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현재 조성 중인 거창일반산업단지 구역이 2개의

법정리(남상면 월평리 일부와 대산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향후 입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서

- **안** **[별표1]** 에서 남상면 월평리(15필지 217,733m²) 일부를 남상면 대산리로 편입하는 내용으로서
- 이 개정 조례안은 향후 입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04. 0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2. 04. 1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 4. 20
- 마. 의안번호: 제2012 - 18호

2. 개정이유

-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우리 군이 교육특구 및 신활력 사업의 만료로 국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기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군비 지원이 요구되는 등 교육에 대한 군의 역할이 가중되고 교육 여건개선 및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예산 수요가 증가되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변경함(안 제3조)

- 당해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의 15%범위 안 ⇒ 해당연도 예산범위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의 체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안 제4조, 제5조, 제7조 ~ 제13조)

- 각호 ⇒ 각 호, 한 때에는 ⇒ 한 경우에는
- 당해 ⇒ 해당, 인 ⇒ 명, 기타 ⇒ 그 밖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외국어 교육특구 및 신활력 사업의 만료로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 기존 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군비 지원이 증가 되어 교육에 대한 군의 역할이 가중되고 교육 여건개선 및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예산 수요가 증가되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 **안 제3조**에서 교육경비의 보조기준액을 조정하고
 - 당해연도일반회계 지방세의 15%범위 안 ⇒ 해당연도 예산범위
 - ☞ 2012년도 지방세 총액 17,889백만원으로 기준액(15%)은 2,683백만원이나 3,578백만원(20%)이 편성됨.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의 제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37,518백만원)이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34,378백만원)를 총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그 외 안 제4조, 제5조, 제7조 ~ 제13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의 체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교육도시로서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군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 도내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등에서 예산의 범위내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04. 0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2. 04. 1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 4. 20
- 마. 의안번호: 제2012 - 18호

2. 개정이유

-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는 1991년 12월 19일(조례 제1238호)로 제정되어 2008년 7월 11일까지 5차 개정하여 사용해 왔으나 행정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복지관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금액을 현실화 하는 등 그동안 복지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 조례의 용어·문장·체계를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이 조례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함(안 제2조)

나. 복지관의 사업내용을 정함(안 제3조)

-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문화사업, 자활사업 등

다. 사용허가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시설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라. 사용허가 취소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전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사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등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마. 사용료 징수·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부업훈련과정, 취미교실과정, 아동교실의 수강료를 인상함(안 별표 1) - 1개월 8,500원 ⇒ 1개월 10,000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복지향상 및 공익 목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함(안 별표2)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복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군의 사정으로 복지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할 경우 등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전액 및 일부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였음(별표 3)

바. 위탁운영 규정(근거)을 둠(안 제8조)

-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의 일부 및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준용규정을 둠(안 제9조)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하도록 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복지관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수강료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복지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례의 용어·문장·체계를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이 조례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에서는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등 사업내용을 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시설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사용허가 사항을 정함.
- **안 제5조**에서는 전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사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등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사용료 징수·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안 별표1**에서는 부업훈련과정, 취미교실과정, 아동교실 수강료를 인상함.
☞ 1개월 8,500원 ⇒ 1개월 10,000원
- **안 별표2**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복지향상 및 공익 목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 **안 별표3**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복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군의 사정으로 복지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할 경우 등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전액 및 일부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위탁운용 규정(근거)을 두어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의 일부 및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준용규정을 두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하도록 하였음.
- 이 개정 조례안은 복지관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수강료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복지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례의 용어·문장·체계를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이 조례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04. 06.
- 나. 제출자: 백범영 · 조선제 의원
- 다. 회부일자: 2012. 04. 1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 4. 20
- 마. 의안번호: 제2012 - 22호

2. 제안이유

-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적용대상은 군에서 발주하는 일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안 제3조)
- 라.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 마.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함(안 제5조)
- 바. 계약담당부서 및 공사감독자는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안 제6조)
- 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아.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자. 군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우수사업체를 선별하여 홍보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차. 군수는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카. 군수는 공사 또는 용역 계약 시 수급인, 하도급인에게 본 조례를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였음.(안 제13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제정 조례안은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일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규정하고
- **안 제4조**에서는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함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 **안 제5조**에서는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계약담당부서 및 공사감독자는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에서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군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우수사업체를 선별하여 홍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군수는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군수는 공사 또는 용역 계약 시 수급인, 하도급인에게 본 조례를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와 같이 이 제정조례안은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임금 및 각종장비 임대료, 하도급 대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04. 06.
- 나. 제 출 자: 강철우 · 강창남 · 안철우 · 이애숙 의원
- 다. 회부일자: 2012. 04. 1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 4. 20
- 마. 의안번호: 제2012 - 23호

2. 제안이유

-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 나. 간접흡연과 금연구역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 마련

-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함

라. 간접흡연의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과 지정 절차 및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제5조)

- 도시공원, 「학교보건법」에 따른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마.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근거를 둌(안 제9조)

-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제정 조례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 간접흡연과 금연구역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3조**에서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 마련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방지 및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도시공원, 「학교보건법」에 따른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에 대한 금연구역의 지정과 지정 절차 및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밖에**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운영토록 하고 있음.
- 이 제정 조례안은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 창 군 독 서 문 화 진 흥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04. 06.
- 나. 제출자: 이성복 · 안철우 · 이애숙 의원
- 다. 회부일자: 2012. 04. 1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 4. 20
- 마. 의안번호: 제2012 - 24호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 모든 군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토록 규정함
- 나. 5년 단위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3조)
 -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시설개선과 도서 자료 확보,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독서활동 권장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독서 진흥을 위한 여건조성과 지원 내용을 규정(안 제4조)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
-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기관(단체) 행사 지원
- 학술행사, 독서교육, 연령·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백일장, 독서 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 진흥행사 개최 및 지원

라.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위한 독서의 달 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민·관 연계 강화를 규정함(안 제6조)

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사. 독서문화 진흥 유공자 및 독서실적 우수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제정 조례안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모든 군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토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5년 단위로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여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시설개선과 도서자료 확보,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독서활동 권장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독서 진흥을 위한 여건조성과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위한 독서의 달 운영을 규정함
- **안 제6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민·관 연계 강화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안 제8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 유공자 및 독서실적 우수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밖에**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운영토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이 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04. 0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2. 04. 1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 4. 20
- 마. 의안번호: 제2012 - 20호

2. 변경이유

- 백두대간 권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교육장 조성에 따른 캠핑장 부지로 사용하여 관광자원화
- 노후화된 보건기관(지소2개소, 진료소2개소)에 대해 2013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주민편의 도모
 - 일부 시설은 벽면균열 등 노후화로 신축이 시급한 실정임.
- 신원면 덕산리 1477 -3번지(잡:2,624㎡)는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으로서 현재 대한사료(주)의 매수신청이 있으므로 매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취득재산의 표시

사업명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 및 지목	수량	기준가격	비고
계		2건		21,215.7	697,913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부지	토지/건물	거창군 개명리 2051-13번지 외 1필지	계	10,475.7	361,662	
			토지	9,908	212,032	
			건물	567.7	149,630	
보건기관 이전·신축 사업 부지	토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576-1번지 외 5필지	계	10,740	336,251	
			토지	10,740	336,251	

4.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m²/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처분시기	재산소유자	매수신청자
		소재지	지목	면적				
처분	토지	신원면 덕산리 1477-3	잡	2,624	2,624	2012	거창군	대한사료(주)

5. 검토의견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은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51-13번지 외 1필지의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 백두대간 권역의 경관과 생태 등 자연환경을 활용 생태교육장을 조성하여 백두대간 생태교육(체험) 거점으로 육성하여 산림이용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및 웰빙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13년부터 2015년까지(3년간) 계획으로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등산안내센터, 등산학교, 게스트 하우스, 휴양캠핑장 설치, 트레일코스, 환경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임.

☞ **사업개요(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기대효과 등), 예산확보대책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보건기관 이전·신축 사업안**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기관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체감으로 느끼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상면 무촌리 576-1번지 외 5필지의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 2012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에 의거 부지 미확보 시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3년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지매입비 300백만원을 요구한 상태임.
- **공유재산 매각 건**은 신원면 덕산리 1477-3번지 2,624㎡(잡종지)는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으로서 현재 대한사료(주)에서 대부하여 축산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수신청이 있으므로 매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